



협 회 일 보



제801호

2023.5.22.(월)

고용노동부, 만 50세 이상 신규 고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

◇ 만 50세 이상 신규 고용 시 1인당 최대 960만원 까지 지원

고용노동부는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중년(만 50세 이상) 신규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「2023년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」의 접수를 지난 '23.1.2(월)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.

동 지원사업은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종도 신청이 가능하오니, 향후 고용계획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< 202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주요 내용 >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		
지원 기간	□ '23.1.2(월) ~ '23.12.29(금)(해당 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)																		
지원 대상	□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※ 우선지원대상기업(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사업장)확인 방법 ⇨ 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)																		
지원 요건	□ 6개월 이상 고용유지(정규직,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) 및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※ 지원 제외직무 확인 필수(청소·방역 관리자, 경비원, 운전원 등) 해당 공지에서 확인 가능																		
지원 방법	□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⇨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□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지참 후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																		
지원 내용	□ 사업장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 지원 (소수점 이하 버림,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원) □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(1년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,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인당 최대 960만원, 중견기업 1인당 최대 480만원) 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급																		
지원 절차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사업참여 신청서 제출</td> <td>⇨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</td> <td>⇨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신중년 고용 및 고용유지</td> <td>⇨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</td> <td>⇨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지급요건 충족시 장려금 지급</td> </tr> <tr> <td>사업주</td> <td></td> <td>고용센터</td> <td></td> <td>사업주</td> <td></td> <td>사업주</td> <td></td> <td>고용센터</td> </tr> </table>	사업참여 신청서 제출	⇨	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	⇨	신중년 고용 및 고용유지	⇨	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	⇨	지급요건 충족시 장려금 지급	사업주		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		고용센터
사업참여 신청서 제출	⇨	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	⇨	신중년 고용 및 고용유지	⇨	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	⇨	지급요건 충족시 장려금 지급											
사업주		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		고용센터											
문의처	□ 고용노동부(☎1350) 또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확인 가능																		

※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moel.go.kr)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 > 「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」에서 확인 가능